

# 윤리 강령

시행일 : 2022년 11월 1일

## 1. 서문

메리디안글로벌(주)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, 그 실천을 다짐한다.

## 2. 반부패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, OECD 뇌물방지협약, UN 부패방지협약, 미국 FCP A 등 뇌물 및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·외 법규를 준수한다.

또한,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,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청탁,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.

## 3. 선물, 접대 등의 수수(授受)

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.

단,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.

## 4. 기부 및 후원

회사의 기부·후원 행위는 부정한 이익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.

단, 정치적 목적의 기부/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.

## 5. 정보보호

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.

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